

중국의 녹색성장 전략과 한·중 무역에 대한 시사점

문익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중국팀 부연구위원
ijmoon@kiep.go.kr

정지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중국권역별·성별 연구단 부연구위원
jhjung@kiep.go.kr

나수엽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중국팀 전문연구원
syna@kiep.go.kr

박현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중국팀 전문연구원
hjpark@kiep.go.kr

이효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중국팀 연구원
hyojinlee@kiep.go.kr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중국은 지난 30년간 연평균 10%에 가까운 고성장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세계 제1위의 에너지 소비국에 이르고 심각한 환경오염과 에너지 부족 사태에 직면함.
- 2013년 초에 베이징을 중심으로 한 스모그 현상은 중국 국내적으로 환경문제를 경제적·사회적 문제로 확대시키는 계기가 됨.
 - 2013년 3월 개최된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는 정부업무보고 발표를 통해 대기오염 측정기준으로 PM2.5를 새롭게 추가함.
 - 중국정부는 베이징, 텐진, 허베이성에 대한 대기 측정기준으로 PM2.5를 제시하고, 향후 2015년까지 PM2.5 측정기준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힘.
- 시진핑 신지도부는 과거의 초고속 성장방식을 탈피하여 성장방식의 질을 강조하는 전환을 추구하면서 제시된 개념 중의 하나가 바로 녹색성장임.
 - 중국의 녹색성장은 지난 30년간 고도성장으로 야기된 환경오염 심화와 에너지 수급불안 등에 대한 해결책일 뿐만 아니라, 향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한 장기 경제발전 전략임.
 - 중국정부는 과거에도 자원절약형, 환경우호형 사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고도성장을 위해 다소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으나, 2000년 이후부터 환경오염의 심각성이 현실화되면서 장기적인 녹색성장 전략을 준비함.
 - 최근 들어 녹색성장을 향후 중요한 발전전략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으며, 다양한 세부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 본 연구를 통해서 중국의 녹색성장 전략을 무역과 연관시켜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우리의 대응방안과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중국의 녹색성장 전략을 분석하여 전략의 배경, 목적, 의미, 세부정책 등을 분석함.
 - 환경정책과 무역정책과의 연관성을 정리하고, 중국의 환경규제정책들이 무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실증분석함.
 - 녹색산업 보조금과 관련된 국제적인 무역분쟁, 무역장벽을 분석하여, 향후 이들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한·중통상분쟁에 대한 시사점 및 대응방안을 제시함.
 - 현재 한·중 무역구조에서 환경상품으로 정의되는 녹색산업의 비중과 협력사례들을 분석하여 향후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2. 조사 및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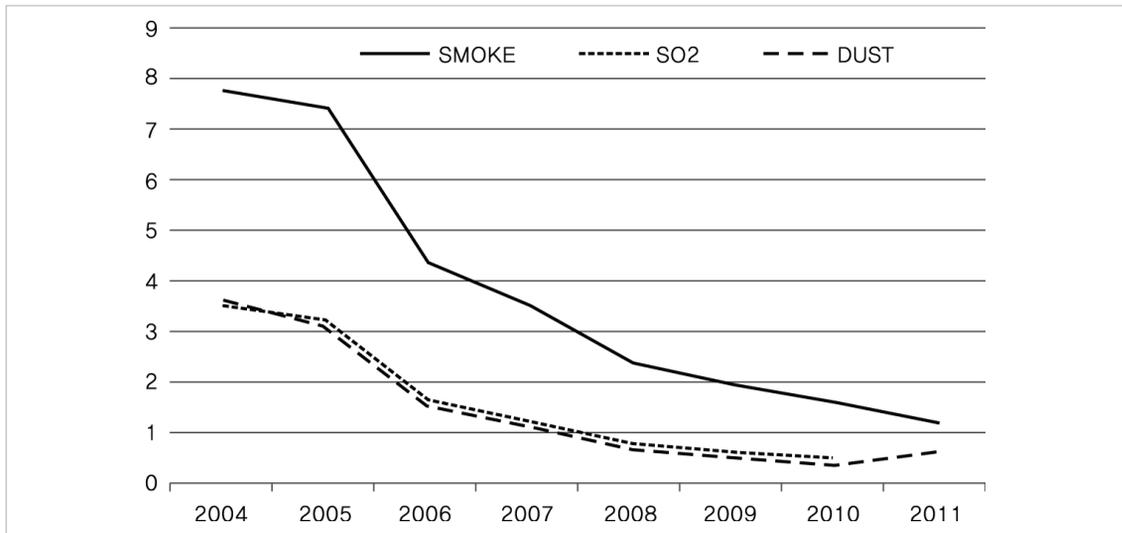
1) 중국의 녹색성장 전략

- 중국의 녹색성장이 본격화되기까지는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하며, 경제개혁정책과 함께 병행될 것으로 판단됨.
 - 정책 추진에 있어서도 중국 지방정부, 기업, 시민들의 동참과 실행 역할이 중요하지만 녹색성장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아직까지는 중앙정부 주도형의 녹색성장 정책이 실시되고 있음.
- 중국 녹색성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경제성장 방식의 전환임.
 - 중국의 녹색성장 전략은 과거의 경제성장 방식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하였으며, 자원절약형·환경우호형 성장으로의 전환은 매우 복잡하고 장기적인 과정이기에 아직까지는 초보적인 단계임.
- 중국은 통일된 국가 녹색성장 로드맵은 없지만, 수년간의 논의와 관련 기획 및 정책의 도입으로 녹색성장 정책의 기본적 체계는 형성함.
- 향후 일정기간 동안 녹색성장에 대한 중국정부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녹색성장의 기반이 되는 중점항목에 대한 재정지원과 환경규제에 있어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온실가스 감축 및 환경오염 저감은 전 세계 환경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공적 성격이 강함.
 - 재정지원이 우선시될 중점 항목으로는 녹색 에너지·바이오 기술·나노 기술 등과 같은 혁신기술과 신재생 에너지·에너지 절약 및 오염물 감축 기술·청결탄 기술 및 원자력 기술·신에너지 자동차 등과 같은 전략적 신흥산업임.
- 친환경 분야의 육성과 환경규제의 강화는 향후 중국의 녹색성장 정책의 핵심이 될 것이며, 일정기간 중앙정부의 관리와 감독이 강화되는 하향식(Top-down) 개혁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됨.

2) 중국의 녹색성장 정책과 무역정책

-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중국의 산업별 대기오염도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

[그림 1] 중국의 산업별 대기오염도(2004~11년)



자료 : 저자 작성.

- 무역정책과 환경정책 간의 관계를 고려해볼 때, 과거 중국은 환경정책을 무역정책의 대체재 (Substitute)로 사용하였음.
 - WTO와 같은 자유무역협정의 증가가 무역장벽을 감소시키면서 환경정책을 느슨하게 하여 환경오염이 심각해짐.
 - 그러나 최근에는 중국이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으로 녹색성장 전략을 추구하면서, 무역정책을 환경정책의 대체재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실증분석에 의하면 1) 중국의 수출산업은 자본집약적이기보다는 여전히 노동집약적인 요소가 강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2) 중국의 환경규제정책으로 인한 환경개선이 수출량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3) 중국의 녹색산업 보조금 관련 WTO 분쟁 사례를 분석

- 미국과 EU가 상계조치 가능 보조금으로 판정한 중국 녹색산업 보조금의 대표적인 유형은 특정 산업에 대한 특혜성 정책 대출, 적정가격 미만의 생산요소 제공으로 나타남.
 - 소득세 감면을 비롯한 세제우대 프로그램과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가 시행한 각종 무상지원 조치들도 상계관세 조치의 주요 규제대상으로 파악함.

- 중국 풍력장비 보조금 관련 WTO 분쟁은 보조금 통보의무 불이행도 분쟁의 중요한 제소근거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줌.
- 최근 중국의 미국과 EU산 폴리실리콘에 대한 상계관세조치는 과거와 달리 선진국 중심의 상계관세 조치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중국정부의 의지를 표출하고 있음.

[표 1] 중국의 녹색산업 분야 상계관세조치 현황

대상국	해당 품목	주요 경과
미국	태양광 폴리실리콘	- 상계관세 조사 개시(2012.7.20) - 상계관세 조사 예비판정(2013.9.16); 2개의 미국 폴리실리콘 생산업체(Hemlock Semiconductor Corp., AE Polysilicon Corp.)에 6.5%의 잠정 상계관세조치 부과
EU	태양광 폴리실리콘	- 상계관세 조사 개시(2012.11.1) - 상계관세 조사기간 연장(2013.11.4); 상계관세 조사기간을 2014년 5월 1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

자료: Ministry of Commerc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ebsite(2013a, 2013b; 보고서 참고문헌)를 참고하여 필자 작성.
(accessed November 21, 2013).

4) 한·중무역의 환경상품 분석

- 중국의 2012년 환경상품 수출규모는 1,501억 달러, 수입규모는 1,022억 달러로 중국 전체 상품무역에서 각각 7.3%와 5.6%를 차지하고 있음.
 - 중국의 2006년 전체 수출에서 환경상품의 수출비중이 5.4%, 전체 수입에서 환경상품의 수입비중이 7.1% 수준임.
 - 지난 6년간 중국의 전체 교역에서 환경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6.2%에서 6.5%로 상승하는 과정에서, 전체 수출 중 환경상품의 비중이 5.4%에서 7.3%로 크게 증가한 반면, 전체 수입 중 환경상품의 비중은 7.1%에서 5.6%로 감소하여 환경상품 교역 적자 국가에서 흑자 국가로 전환함.

[표 2] 중국 및 전 세계의 환경상품 교역 현황(2006, 2012년)

(단위: 억 달러)

연도		중국	전 세계	중국/전 세계	
2006년	수출	525	(5.4)	7,028 (5.9)	7.5%
	수입	562	(7.1)	7,003 (5.8)	8.0%
	교역	1,088	(6.2)	14,031 (5.9)	7.8%
2012년	수출	1,501	(7.3)	10,923 (6.6)	13.7%
	수입	1,022	(5.6)	10,696 (6.2)	9.6%
	교역	2,523	(6.5)	21,620 (6.4)	11.7%

주: () 안은 전 세계 및 중국의 전체 교역에서 환경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UN COMTRADE, <http://comtrade.un.org>(accessed November 5, 2013).

- 협력사례 분석결과에 의하면, 중국 환경시장에 처음 진출하는 한국기업은 현지 합자사와의 협력사업 추진을 통하여 해당 환경업계의 중국 시스템을 충분히 습득하고 중국 내 인지도를 쌓은 후에, 자율적이고 독자적인 경영을 위하여 독자회사로의 전환을 추진해야 함.

3. 정책 제언

1) 한·중 FTA 협상에 대한 시사점

- 중국의 환경사업 관련 입찰방식의 다양화를 요구하고, 중국정부도 녹색자금을 함께 부담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여 FTA 협정문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은 뉴질랜드와의 FTA와 홍콩과의 CEPA에서 상업적 주재의 시장접근 제한을 완화한 바가 있으며, 내국민대우 mode 1~3 ‘제한없음’은 WTO DDA 양허안 수준과 동일함.
 - 우리 정부는 상업적 주재의 시장접근 제한을 완화하고 내국민대우 mode 1~3에 ‘제한없음’을 유지하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음.

2) 한국기업에 대한 시사점

- 중국시장 진출이 반드시 필요한 기업들은 진출을 하되, 중국의 녹색성장이 본격화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자사 경쟁력을 강화해나가는 자세가 바람직함.
 - 진출방식에 있어서는 아직 중국의 녹색성장이 중앙정부 주도라는 점에서 민·관 공조에 기반한 진출이 유리
 - 특히 중소기업의 시장정보 수요가 많은 만큼 관련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한편, 중소기업들이 중국 환경시장에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시장 발굴을 함께 고민하고 적극 지원하는 정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개별 기업이 나서기보다는 중소기업 관련단체와 지방정부가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녹색기업 비즈니스 매칭 상담회 등의 방식을 통해 기술협력, 투자확대, 시장진출 등 협력기회를 모색해야 함.
- 환경규제 강화에 대한 한국기업의 대응이 필요함.
 - 현재 환경보호규제 강화는 주로 오염배출에 대한 행정적 강제 정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주로 탈황, 탈질 등 오염저감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설치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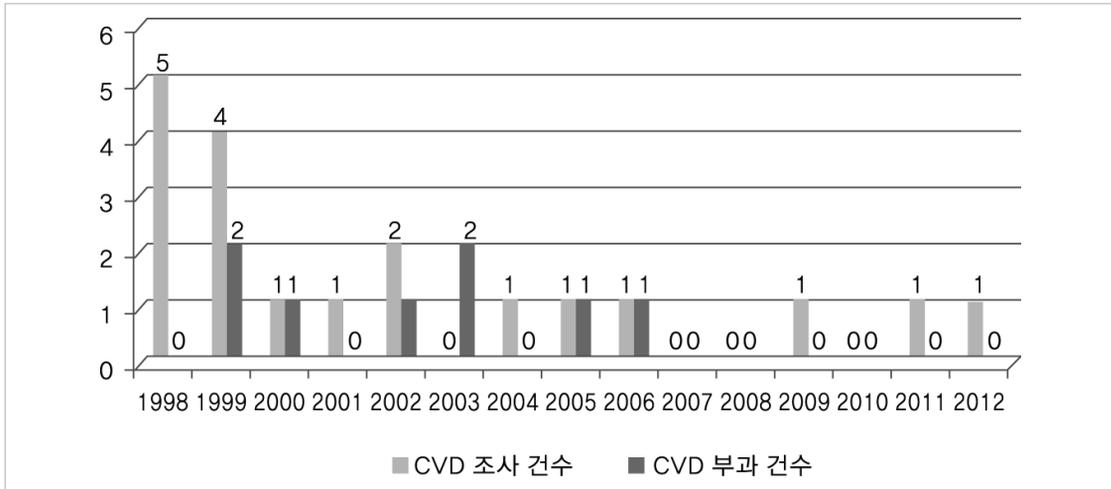
- 환경규제로 인해 기업들은 관련 세금, 벌금, 탈황·탈질 등 오염저감설비 설치 등의 비용부담이 높아질 것이며, 특히 환경오염과 관련이 많은 산업에 속한 기업들은 상당한 비용을 부담해야 함.
- 중국의 환경규제정책이 다양한 형태로 발표되는 것도 주의해야 하며, 관련 법률과 법규, 각종 규칙과 계획, 그에 따른 세칙뿐만 아니라 국무원 및 관련 부처의 중요 문건, 명령-규제성 환경정책, 환경경제정책 등 매우 다양하게 발표되고 있음.

3) 한·중 무역에 대한 시사점

① 한국의 녹색산업 보조금 분쟁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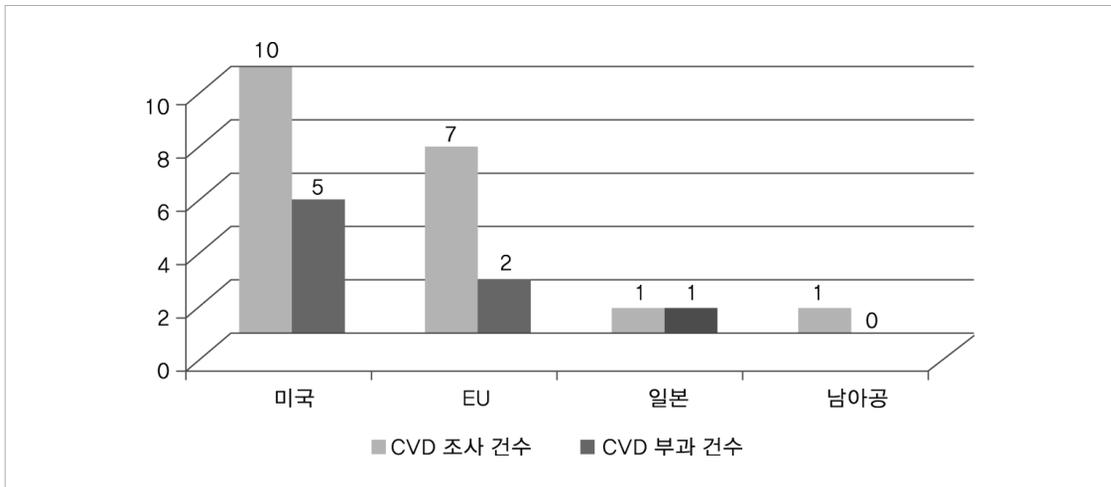
- 향후 한국의 녹색산업 분야에서도 상계관세조치로 인한 통상분쟁이 격화될 위험이 있음.
 - 2011년 11월 미국의 중국산 태양전지 상계관세 조사로 비롯된 중국 녹색산업 보조금에 대한 규제 조치는 2012년 EU의 대중 태양광 패널 및 주요 부품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로 이어짐.
 - 미국은 중국의 풍력장비 보조금 관련 WTO 분쟁 및 중국 보조금 통보 투명성 문제로 중국과 갈등을 빚음.
 - 중국이 미국과 EU의 녹색산업 보조금에 대한 상계관세 규제에 적극 맞서고 있어 녹색산업 보조금을 둘러싼 주요국간 대립은 통상분쟁의 새로운 이슈로 대두됨.
 - 현재 주요국들은 환경·에너지 문제를 해소하고 신성장 동력으로 자국의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함.
 - 자국의 재생에너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상계관세와 같은 무역구제조치를 적극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통상분쟁이 더욱 확산될 우려가 있음.
- 지금까지 한국이 외국 정부의 보조금에 대해 상계관세조치를 취한 사례는 발생하지 않고 있음.
 - 이에 반해 한국은 1998년 이후 다른 국가로부터 지속적으로 상계관세조치를 받았음.
 - 한국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는 1998년 5건을 기록한 이후 점차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1995~2012년까지 총 조사 건수 기준으로 볼 때, 19건으로, 중국(62건), 인도(55건) 다음으로 세계 3위의 상계관세 조사 대상국이며, 19건 가운데 실제 상계관세 부과가 내려진 것은 8건임.
- 한국에 대해 상계관세조치를 부과한 나라는 미국, EU, 일본, 남아공 4개 국가이며, 이 가운데 미국은 한국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 19건 중 10건, 실제 상계관세 부과 8건 중 5건을 취하며 최대 상계관세조치 부과국의 위치를 점하고 있음.

[그림 2] 한국에 대한 연도별 상계관세조치 추이



자료: WTO website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accessed November 2, 2013).

[그림 3] 외국의 대한국 상계관세조치 현황



자료: WTO website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accessed November 2, 2013).

② 녹색산업 보조금 분쟁에 대한 대응방안

- 한국은 중국의 사례에서처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제품이 직접 상계관세조치 대상이 되었던 사례는 아직까지 없음.

- 한국이 외국으로부터 받은 상계관세조치는 품목별로 볼 때 대부분 철강 및 전기전자 제품에 집중되어 있음.
 - 한국은 미국-중국, EU-중국 간 사례와 같이 재생에너지 제품에 지급된 녹색산업 보조금 규제에서 발생한 통상분쟁은 겪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 그러나 한국도 최근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산업진흥, 보급 활성화를 위해 태양광, 풍력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 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재생에너지 제품에 대한 주요국의 상계관세조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볼 수 없음.
 - 특히 세계 최대 상계관세조치 부과국인 미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조치를 받았다는 점까지 고려해볼 때 한국의 녹색산업 분야에서도 상계관세조치로 인한 통상분쟁이 격화될 위험이 있음.
- 이전까지 한국과 중국 간 통상마찰에서 녹색산업 분야가 직접 그 대상이 되었던 경우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중국의 조치가 양국간 녹색산업 보조금으로 인한 분쟁의 불씨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음.
- 2013년 7월 중국이 한국산 태양광 폴리실리콘을 잠정 반덤핑 관세조치로 규제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함.
 - 한국과 중국 사이에는 녹색산업 분야를 포함해 보조금에 대한 상계관세조치에서 비롯한 분쟁 사례는 나타나지 않음.
 - 현재 협상중인 한·중 FTA 체결로 양국간 시장개방이 확대되면 녹색산업 제품의 교역이 증가함에 따라 장차 녹색산업 보조금 관련 분쟁사례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4) 대중국 환경상품 내수시장 진출을 위한 대응방안

- 중국 해관수입통계를 통해서 환경상품 내수용 수입시장 비중을 분석해본 결과, 독일, 일본, 미국, 한국, 대만순을 기록함.
- 독일만이 전체수입 점유율보다 내수용 수입시장 점유율이 높았으며, 한국의 경우에는 전체무역 점유율(8.26%)보다 내수시장 점유율(6.86%)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환경상품 교역에서 가공무역 위주의 무역구조를 지니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국은 내수시장에 진출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을 시사함.
 - 10대 수출품목들을 중심으로 경쟁관계를 파악한 결과, 일본이 한국보다 많은 품목들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일부 품목별로는 주로 독일, 대만과 경쟁관계를 형성함.
 - 이에 따라 중국 환경상품 내수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경쟁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일본기업들의 진출사례를 면밀하게 조사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함.

- 첫째, 한국의 환경기업이 비교적 높은 경쟁력과 강점을 가지고 있는 환경 분야 틈새시장을 발굴하도록 유도함.
 - 중국의 환경 관련 사업에는 그동안 한국기업이 집중하였던 대규모 정화사업 외에 다양한 진출 유망 분야들이 존재함.
- 둘째, 우리 기업이 환경상품 및 기술의 현지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진출 초기에 금융 및 경영진단 등의 지원 강화가 필요함.
 - 중국시장에 최적화된 기술 및 시스템 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강화하고, 중국 사업이 정착 되는 과정에서 한국기업의 경쟁력과 문제점 등을 진단하고 경영 효율화방안 및 개선사항을 제시 해주는 경영자문 제공이 필요함.
- 셋째, 우수한 로컬 환경기업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나 관련 정보력이 약한 중소 환경기업을 위한 실질적인 매칭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넷째, 환경상품의 과도하고 불투명한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특수한 경우에 대한 통관허용 및 무관세 수입 등을 의제로 중국정부와 협상할 필요가 있음.

참고자료

[표 3] 중국 12차 5개년 계획의 녹색성장 전략

구분	주요 내용
녹색산업 발전	전략적 신흥 산업(신에너지, 신에너지 자동차, 신소재,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등)과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에너지 소비가 많고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제품·기업·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현대 서비스 산업 발전을 통한 저탄소 녹색 서비스 체계 발전
세계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배출 통제, 기후변화 대응능력 강화, 광범위한 국제협력 전개
자원절약 및 관리 강화	에너지 절약 추진, 수자원 절약, 집약적 토지 이용, 녹색광업 발전과 광산자원 절약
순환경제 발전	녹색 생산체계 발전, 녹색소비 모델 보급, 자원 순환이용 회수체계 완비, 녹색기술과 표준 마련
녹색투자과 응자	생태건설·환경보호·에너지 절약과 오염물질 감소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 세수 감면·재정 보조 등의 정책을 추진, 정부투자 확대, 녹색금융의 역할 강화
환경보호 강화	오염물 배출 감소, 도시 생활오수와 쓰레기 처리시설 건설, 중점구역의 환경복원, 탈황/탈질 장치 설치, 중금속 오염방지 사업, 환경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녹색개혁과 정책 실행	오염 배출자에 대한 지불제도, 녹색세제 개혁 추진, 환경보호세·오염세·탄소세 징수, 수도세 및 전기세 제도 개혁, 제품유 가격의 시장화, 환경보호 정책체계·보상체계·법률체계·평가체계 완비, 오염배출권 유상사용과 교역제도 완비, 탄소배출 교역시장 건립
녹색무역	전 세계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신기술을 이용, 국제 환경보호 표준에 부합하는 제품 수출을 확대, 오염물질의 이동을 억제, 국제협력 전개, 국제 환경공약 준수

자료: 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二个五年规划纲要.

[표 4] 미국이 WTO에 통보한 중국의 녹색기술 보조금

유형	중앙/지방	보조금 조치 내용
금지	중앙(3)	1. 풍력발전설비 산업화를 위한 특별기금 운용에 관한 잠정조치 발표에 관한 재정부의 통지(2008년) 2. 수출제품 R&D 기금 운용에 관한 조치(2002년) 3. 풍력발전설비의 국산화 촉진을 위한 지도통지(2000년)
조치가능	중앙(28)	1. 재생가능 에너지법(2009) 2. 재생가능 에너지 발전의 가격 및 비용배분 잠정조치에 대한 발개위의 통지(2006) 3. 재생에너지 개발 특별기금 운용에 관한 재정부의 잠정조치(2006) 4. 주요 국가과학기술 향목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실행세척(2006) 5. 재생에너지 발전 가격 할증 수입 배분 잠정조치에 관한 발개위의 통지(2007) 6. 설비 제조산업 구조조정과 진흥 계획(2009) 7. 설비 제조산업 진흥촉진을 위한 국무원의 약간의견(2006) 8. 환경보호와 에너지, 수자원보호 프로그램을 위한 기업소득세 혜택 목록발간을 위한 재정부, 세무총국, 발개위의 통지(2009) 9. 국가 하이테크 R&D 발전계획(863 계획) (1986)

[표 4] 계속

유형	중앙 / 지방	보조금 조치 내용		
조치가능	중앙 (28)	10. 중국 국가 중점기초연구발전계획(973 계획) (1997)		
		11. 신재생에너지 국제 과학기술협력 계획(2007)		
		12. 신재생에너지 개발 지원에 관한 통지(1999)		
		13. 토지 운용법(1986, 1988, 2004)		
		14. 재생가능 에너지 절약 건축자재 재정보조기금 잠정판법에 관한 통지(2008)		
		15. 고효율 및 에너지 절약 제품 촉진을 위한 재정보조기금 잠정판법(2009)		
		16. 기업소득세법(2007)		
		17. 풍력발전설비 산업개발 지침(2007~2010)		
		18. 대형풍력터빈 시스템의 주요 부품 및 원자재 수입을 위한 인센티브 정책의 개정(2008)		
		19. 자원과 기타 제품의 종합적 이용으로 생산된 제품에 대한 부가세 정책(2008)		
		20. 풍력발전소의 설계건축을 위한 토지사용과 환경보호를 위한 잠정판법(2005)		
		21. Golden Sun Demonstration Project(金太阳示范工程) 실행 및 재정지원기금 운용에 관한 잠정조치(2009)		
		22. 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 기술을 위한 재정보조 잠정판법에 관한 재정부 통지(2009)		
		23. 태양광발전 건물 시범공정 지도의견(2009)		
		24. 잠을 활용한 에너지 발전 보조기금 잠정판법(2008)		
		25. 자동차 산업 조정 및 진흥계획(2009)		
		26. 배기량 1.6L 이하 승용차 구매 시 자동차 구매세 감면에 관한 재정부 통지(2009)		
		27. 고효율 조명제품 촉진 재정기금 잠정판법(2007)		
		28. 풍력발전개발 촉진을 위한 약간의견(1999)		
		지방 (6)	지방 (6)	1. 후난성: 환경보호산업 발전촉진에 관한 의견(2009)
				2. 윈난성: 재생가능 에너지 발전을 위한 특별기금 임시판법(2006)
				3. 산시성: 신에너지 발전촉진에 관한 약간의견(2009)
				4. 닝샤자치구: 닝샤지역 설비산업클러스터 발전 계획(2008)
				5. 닝샤자치구: 닝샤 산업의 기술혁신 계획(2008~2012) (2008)
				6. 산둥성: 산둥성 에너지 기금(2007)
		관련조치	중앙 (9)	1. 재생에너지 산업발전 지침목록의 인쇄와 배포에 관한 발개위의 통지(2005)
				2. 산업구조 재조정에 관한 목록(2005)
				3.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국가의 중장기 프로그램(2006-2020)
4. 중국 재생가능 에너지 중장기 발전계획(2007)				
5. 재생가능 에너지를 위한 11차 5개년 계획(2008)				
6. 외상투자 장려 하이테크 제품 목록(2003)				
7. 하이테크 기업에 대한 금융서비스 향상과 강화를 위한 상업은행 지도의견(2006)				
8. 신 하이테크 산업의 발전과 자주 독립혁신역량 제고를 위한 개발구 촉진에 관한 약간의견의 인쇄와 배포에 관한 통지(2007)				
9. 중서부지역 외상투자 우선산업 목록의 실행에 관한 통지(2009)				

자료: WTO(2011b), 재인용: 박윌라 외(2011, p. 86).

[표 5] 중국의 주요 수출 환경상품(2012년)

HS코드	품목명	수출액 (억 달러)	비중 (%)
854140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 또는 패널에 조립되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포함한다) 및 발광다이오드	175	11.6
850440	정지형 변환기	156	10.4
848180	파이프 · 보일러의 동체 · 탱크 · 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 · 코크 · 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 및 온도 제어식의 밸브를 포함한다) - 기타의 기기	89	5.9
392690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 - 기타	77	5.2
854370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 - 기타의 기기	76	5.1
732690	철강제의 기타 제품- 기타	50	3.3
853710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 · 패널 · 콘솔 · 책상 · 캐비닛 및 기타의 기반(基盤)(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 한하며 제90류의 기기 및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고, 제8517호의 교환기기를 제외한다) -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	39	2.6
850300	부분품(제8501호 또는 제8502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	37	2.5
853931	형광램프(열음극형의 것에 한한다)	36	2.4
848190	파이프 · 보일러의 동체 · 탱크 · 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 · 코크 · 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 및 온도 제어식의 밸브를 포함한다) - 부분품	35	2.3
상위 10대 품목		770	51.3
상위 20대 품목		953	63.5
상위 30대 품목		1,089	72.5
전체 품목		1,501	100.0

자료: UN COMTRADE, <http://comtrade.un.org>(accessed November 10, 2013).

[표 6] 중국의 주요 수입 환경상품(2012년)

HS코드	품목명	수출액 (억 달러)	비중 (%)
854140	광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 또는 패널에 조립되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포함한다) 및 발광다이오드	79	7.7
847989	보일러 기계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 - 기타	65	6.4
850440	정지형 변환기	63	6.1
903180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윤곽 투영기 - 기타의 기기	40	3.9
900190	광섬유와 광섬유다발, 제8544호의 것 외의 광섬유 케이블, 편광재료제의 판, 각종 재료제의 렌즈(콘택트렌즈를 포함한다), 프리즘 · 반사경과 기타의 광학용품으로서 장착되지 아니한 것(광학적으로 연마하지 아니한 유리제의 광학용품을 제외한다) - 기타	38	3.7
903289	자동조절용 또는 자동제어용의 기기 - 기타	38	3.7
848180	파이프 · 보일러의 동체 · 탱크 · 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 · 코크 · 밸브 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 및 온도 제어식의 밸브를 포함한다) - 기타의 기기	37	3.6
853710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 · 패널 · 콘솔 · 책상 · 캐비닛 및 기타의 기반(基盤)(제 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하며 제90류 의기기 및 수직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고, 제8517호의 교환기기를 제외한다) -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	36	3.5
840991	불꽃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 전용의 것	28	2.7
392690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 - 기타	27	2.6
상위 10대 품목		450	44.0
상위 20대 품목		623	61.0
상위 30대 품목		721	70.6
전체		1,022	100.0

자료: UN COMTRADE, <http://comtrade.un.org>(accessed November 13, 2013).

[표 7] 한국의 대표적인 대중국 환경수출상품

(단위 : 백만 달러)

순위	품목	품명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1	900190	광섬유와 광섬유다발, 제8544호의 것 외의 광섬유 케이블, 편광재료제의 판, 각종 재료제의 렌즈(콘택트렌즈를 포함한다), 프리즘·반사경과 기타의 광학용품으로서 장착되지 아니한 것(광학적으로 연마하지 아니한 유리제의 광학용품을 제외한다) - 기타	816	853	933	1026	1042
2	854140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 패널에 조립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 및 발광다이오드	269	276	728	876	1038
3	847989	공기청정기 등의 기계류	544	454	669	846	693
4	392690	플라스틱제의 기타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 - 기타	323	264	303	335	420
5	903180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윤곽 투영기 - 기타	179	165	282	329	397
6	840991	불꽃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 전용의 것	184	190	271	368	365
7	903289	자동조절용 또는 자동제어용의 기기 - 기타	119	146	227	291	309
8	392010	에틸렌의 중합체의 것	77	79	136	233	273
9	841950	열교환기	75	64	95	82	196
10	840999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 기타	89	76	124	181	186

자료: 중국 해관통계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표 8] 중국 환경상품 수입시장에서의 점유율

(단위 : %)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한국	일반무역	6.11	4.99	4.96	5.34	6.13	6.49	6.86
	전체무역	7.83	7.79	7.08	7.20	7.56	7.79	8.26
대만	일반무역	8.89	3.48	3.07	2.78	4.39	4.28	4.37
	전체무역	6.88	6.79	6.23	5.39	6.41	5.79	5.64
일본	일반무역	23.03	20.69	20.49	20.83	24.17	23.39	20.92
	전체무역	27.52	23.85	22.52	21.06	23.74	23.19	21.79
미국	일반무역	14.87	14.46	14.93	14.21	12.69	12.67	13.36
	전체무역	12.89	11.94	12.52	12.47	11.35	11.12	11.76
독일	일반무역	20.86	23.10	23.61	22.30	20.68	21.84	22.14
	전체무역	14.03	15.39	16.88	17.37	15.85	16.66	16.58

자료: 중국 해관통계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표 9] 미국의 대중 WTO 제소 현황(2013년 7월 말 기준)

제소 대상	제소일	진행상황	이행상황
1. 반도체 수입에 대한 차별적 증치세 부과	2004.3.18	양자 합의(2004.7.8)	중국, 해당 조치 폐지 합의
2. 자동차 부품수입에 대한 차별적 규제	2006.3.30	WTO 상소기구, 판정 보고서(2008.12.15): 미국 승소	중국, 관련 조치 폐지 발표(2009.8.31)
3. 국내업체(철강, 목재 및 제지)에 대한 수입대체보조금 및 수출보조금 지급	2007.2.2	양자 합의(2007.11.29)	중국, 관련 조치 폐지 발표(2007.12.19)
4.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조치	2007.4.10	WTO 패널 보고서 채택(2009.4.15): 미국 승소	중국, WTO 판결 이행 약속이행 약속(2019.3.19)
5. 출판 및 시청각 제품의 무역권과 유통 서비스 조치	2007.4.10	상소기구 보고서(2009.12.21): 미국 승소	중국, 권고사항 이행 완료(2012.5.24)
6. 금융정보서비스 공급에 대한 차별적 조치	2008.3.3	양자 합의(2008.11.13)	중국, 관련 조치 폐지 합의
7. '유명 브랜드' 프로그램 (수출 보조금)	2008.12.19	양자 합의(2009.12.18)	중국, 해당 프로그램 폐지 합의
8. 원자재(보크사이트, 마그네슘, 실리콘, 망간, 아연 등) 수출규제 조치	2009.6.23	상소 보고서(2012.1.30): 미국 승소	중국, 해당 프로그램 폐지 발표(2012.12.31)
9. 방향성전기강판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조치	2010.9.15	상소 보고서(2012.10.18): 미국 승소	2013년 7월 말까지 합리적 이행기간 결정(2013.5.3)
10. 전자결제서비스(EPS) 공급업자에 대한 차별	2010.9.15	패널 보고서(2012.7.16): 미국 승소	중국, 이행사항 완료 발표(2013.7.23)
11. 풍력 장비 보조금	2010.12.22	양자 합의(2011.6.7)	중국 관련 조치 폐지 약속
12. 닭고기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조치	2011.9.20	패널 보고서(2013.8.2): 미국 승소	-
13. 희토류, 텅스텐, 몰리브덴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	2012.3.13	패널 구성(2012.9.24)	-
14. 자동차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조치	2012.7.5	패널 구성(2013.2.11)	-
15.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수출보조금	2012.9.17	-	-

주: 제소대상이 보조금인 경우 음영 처리함.

자료: WTO website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accessed October 23, 2013).